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5320 |
|----------|-------|

발의연월일 : 2022. 4. 19.

발의자 : 이종성 · 성일종 · 이명수

김예지 · 조명희 · 구자근

박대수 · 서정숙 · 정운천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항제4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 4. (생 략)</p> | <p>제8조(위원의 해촉) -----</p> <p>-----</p> <p>-----</p> <p>-----</p> <p>-----.</p> <p>1. <u>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u>-----</p> <p>-----</p> <p>2. ~ 4. (현행과 같음)</p>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br>⑤ (생 략)<br>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br>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br>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br>우 해촉할 수 있다.<br>1. ~ 3. (생 략)<br>4. <u>실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br>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br>⑤ (현행과 같음)<br>⑥ -----<br>-----<br>-----<br>-----.<br>1. ~ 3. (현행과 같음)<br>4. <u>사고 또는 신체적 · 정신적</u><br><u>질환으로 장기간</u> -----<br>----- |
| 5. (생 략)<br>⑦ (생 략)   | 5. (현행과 같음)<br>⑦ (현행과 같음)  |